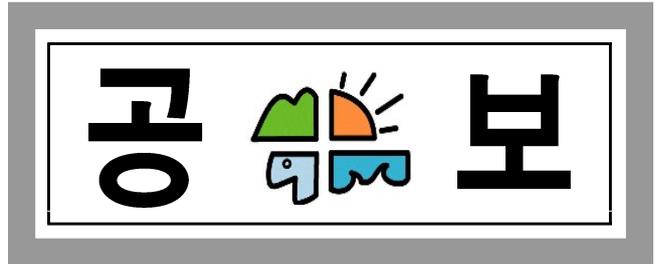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206호 2019년 4월 29일(월)

규 칙

- 속초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2

속초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월 29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35호

속초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민의 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 행사) 「속초시민의 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자랑스러운 시민상 시상
3. 시민통합 체육행사
4. 문화·예술행사
5. 시 공공시설 무료개방
6.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3조(수상부문의 범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발전부문 : 관광, 농·수산, 상업, 공업, 건설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사람
2. 문화예술부문 :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부문에 기여한 사람
3. 사회복지·효행부문 : 장애인 분야 등 시민 복지증진과 사회사업에 기여한 사람 또는 효자, 효부 등 경로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여 타인의 모범이 된 사람
4. 교육학술·체육부문 :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뛰어난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 교육계 일선에서 오랫동안 후진양성에 힘쓴 모범교육자 또는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 인구의 보급,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체육인과 우수선수
5. 인권·평화부문 :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통해 누구나 존경받는 인권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 인류의 평화와 화해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드높인 사람

제4조(기관, 단체의 범위) ①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 지원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교육청)
2. 단체
 -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제5조(추천 구비서류 등) ①추천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2. 추천자가 연명일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추천자 연명부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이력서 1부

5.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 1부

6. 그 밖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자랑스런 시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자에게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 및 의견

②제1항 제2호에는 연명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서명, 서명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 ①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수상자 결정은 부문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과장을 간사로 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7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통보) ①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부문별로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와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위원장은 부문별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선정보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

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민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9조(시민증의 규격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로 발급하는 자랑스러운 시민증(이하 “시민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0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시민상 수상자 공적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등록기준지		사진 3.5cm× 4.5cm (모자 벗은 상반신 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이내에 촬영 한 것)
주 소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연 락 처		
학 력		
졸업연월일	학 력 사 항	전공분야
주요경력(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연 월 일	경 력 사 항	비 고
상별 (본란 부족시 별지사용 첨부)		
연 월 일	상 별 사 항	비 고
위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수상후보자 심사조서

추천부문		순 위	
주 소			
성 명 (한 자)	성 별	생년월일	
직 업 (근무처)	직위 및 직급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부문 심사위원			
성 명 (인)			
속초시장 귀하			

수상후보자 선정보고서

부 문	성 명	생년월일	주요업적	비고
지역사회 발 전				
문화예술				
사회복지 효 행				
교육학술 체 육				
인권 · 평화				

위와 같이 심의 선정함.

년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시민상 수상자 공적대장

년 도 별			부 문 별	
성 명	(한 자)			사진 3.5cm×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		직위 및 직급		
(공 적 개 요)				

자랑스런 시민증 수여대장

일련 번호	수여연도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성별)	비고

자랑스러운 시민증

(앞 면)

(뒷 면)


자랑스러운 시민증
(수상부문)

사진 3.5cm×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속 초 시

발급번호 : 제 년도 - 일련번호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속초시 시민의 날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은 분임을 증명합니다.

1. 이 증명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하거나 양도하지 못함.
2. 이 증명은 직무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거나 속초시청 자치행정과로 연락바랍니다. ☎ (033)639-2137

년 월 일
속 초 시 장(인)

전·후면(규격 가로 6cm × 세로 9cm)

재질 : 플라스틱